

의안번호	2209231
의 퇴 인	서명옥의원
회 답 일	2025.03.26.
추계번호	25C1798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암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관리·운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억 900만원씩, 향후 5년간 총 5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-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암관리기금 관리·운용 비용은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기금의 운용·관리 (안 제45조의5)	109	109	109	109	109	545	1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(기금의 조성)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암검진사업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암관리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-(현행) 국민건강증진기금 -(개정) 암관리기금	재량규정
2	안 제13조 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암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(현행) 국민건강증진기금 -(개정) 암관리기금	의무규정

3	안 제37조 (출연 또는 보조)	○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<u>암관리기금</u>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1항) - (현행) 국민건강증진기금 - (개정) 암관리기금	재량규정
4	안 제45조의3 (기금의 조성)	※ 정부는 암검진,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,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함(안 제45조의2) 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함 1. 정부출연금 2. 다른 회계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,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. 기금운용 수익금 등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	의무규정
5	안 제45조의4 (기금의 용도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,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암검진사업의 지원 2.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3. 암의 발생·예방·진단·치료·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4. 암의 예방·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.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○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, 지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45조의5 (기금의 운용·관리)	○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·관리함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조 (암검진사업)	-	○ 암검진사업, 의료비 지원사업, 국가암센터 운영 지원 및 안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들은 기시행되고 있는 ‘국가암관리’ 사업에 따라 현행 예산과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- 보건복지부는 “국가암관리” 사업에 2025년 기준 835억 7,000만원(국민건강증진기금)을 배정하여 국가암검진, 암관리기반 구축,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
2	안 제13조 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)		
3	안 제37조 (출연 또는 보조)		
4	안 제45조의3 (기금의 조성)	×	○ 암관리기금의 설치하여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암관리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이는 재원 이동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. 다만, 기금 설치 및 용도 명문화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와 그 규모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
5	안 제45조의4 (기금의 용도)		
6	안 제45조의5 (기금의 운용·관리)	○	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기금의 운용·관리(안 제45조의5)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
-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관리·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
 - 개정안에 따른 암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위한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준용하여 기금 관리 방법을 가정
 -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직접 관리·운용하며, 2025년 기준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에 1억 900만원을 배정하였고 기금관리비는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일반 수용비,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암관리기금을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9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5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구분							
추가재정소요	109	109	109	109	109	545	1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